

韓國圖書館協會 公共圖書館部會規程

第 1 條 (設置)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이하 圖協이라 稱함) 定款 第26條의 規程에 따른 公共圖書館部會(이하 部會라 稱함)의 設置는 이 規程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事務所는 會長 在任圖書館에 둔다.

第 2 條 (目的)

部會는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위한 調查研究 및 事業遂行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 (事業)

部會는 다음의 事業을 遂行한다.

1. 公共圖書館發展을 위한 調查研究
2. 研究物의 編纂 및 刊行
3. 公共圖書館發展을 위한 其他 事業

第 4 條 (會員)

部會員은 다음과 같다.

1. 公共圖書館
2. 圖協會員으로서 公共圖書館에 勤務하는 者
3. 圖協會員으로서 部會員이 되기를 希望하는 者
4. 會員은 所定の 會費를 納入하여야 한다.

但, 會費의 等級과 金額은 常任研究委員會에서 定한다.

第 5 條 (任員)

1. 會長 1名
2. 副會長 1名
3. 常任研究委員 15名以內
4. 幹事 1名

第 6 條 (任務)

部會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部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理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幹事は 會長의 命을 받아 部會의 事務를 處理한다.

第 7 條 (任員選舉)

任員의 選出方法은 다음과 같다.

1. 會長 副會長은 常任研究委員會에서 選出한다.
2. 常任研究委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3. 幹事は 會長이 委囑한다.

第 8 條 (任期)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重任할 수 있다.

但, 任員中 缺員이 생길 때에는 常任研究委員會에서 補選하되 補選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 9 條 (會議)

會議는 部會總會(이하 總會라 함)와 常任研究委員會의 2種으로 하되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1. 總會는 年 1回 開催한다.
2. 常任研究委員會의 議決이 있거나 또는 委員 3分之1 以上이 要求할 때
3. 會員 10分之1 以上이 議題를 明示하여 要求할 때

第10條 (總會의 機能)

總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事業報告
2. 規程의 變更
3. 其他 重要한 事項의 議決

第11條 (常任研究委員會의 機能)

1. 第3條에 明示된 事業의 審議決定
2.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의 審議決定

第12條 (補助金 支給)

部會는 公共圖書館이 納付한 會費中 그 一部를 事業補助金으로 支給 받을 수 있다.

第13條 (補助金 申請)

部會에서 補助金を 申請하고자 할 때에는 補助金 申請書와 事業計劃書를 添附하여 事業施行豫定日로부터 30日 以前에 圖協會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第14條 (改定)

이 規定은 公共圖書館部會를 거쳐 圖協 理事會에서 改定한다.

附 則

本規程은 圖協 理事會가 議決한 1968年 6月 21日 부터 施行한다.